

 국토교통부		<b>보도 설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12. 30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·과장 이유리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진해룡 ·☎ (044) 201-3366, 3367
	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김무극 ·☎ (044) 201-458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자동역류방지댐퍼 단체표준인증제품 사용은 법적 의무기준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경제, 12.30.) >

- ◆ 인증땀 국산...생산땀 중국산 구멍 뚫린 ‘품질인증 시스템’
  - 국산 모터를 장착해 단체표준 인증 받은 후 생산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모터 사용
- ◆ 정부 ‘표준인증’ 의무화 했는데...제조사는 중국산으로 눈속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5년 3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여 주택의 부엌·욕실 및 화장실 배기통의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의무설치 하도록 하였으나, 단체표준인증제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.

\*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6호

- 가.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(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 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)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
- 나.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

- 「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」의 경우 발주처 또는 용역업자 등이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표준 시방서 상의 주택용 주방환기장치의 경우 KS표시 인증제품으로 선정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표준 시방서는 권장사항이므로 단체표준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, 현장별로 설계도서 반영여부\* 등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.

\* 설계도서에 표준 시방서를 반영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위법

□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경우 「산업표준화법」 및 「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(해당 제품군의 경우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인증함)가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

○ 단체표준 상의 성능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표시제거, 표시정지,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자동역류방지댐퍼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강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201-33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